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10만엔/1세대) 안내

수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1 세대당 10만엔)** 은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세대나 2022년 1 월 이후에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 상황이 급변한 세대를 지원하는 새로운 급부금입니다.
-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부금의 지급액

1 세대당 10만엔

급부금 지급 시기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시구정촌이 확인서(또는 신청서)를 수리한 후, 기재상의 누락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과 신청 유무

지급대상 세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세대 전원이 2021년도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에 해당하는 세대

2021년 1 월 이후 수입이
「주민세 비과세 상당」
으로 감소한 세대(가계급변세대)

거주 시구정촌에서 확인서가 발송된다. (요반송)
※일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시점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정촌에서 확인서가 송부됩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정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신청서 배부처】 시구정촌 급부금 담당창구 등

상세 내용은 뒷면 「I」 에

상세 내용은 뒷면 「II」 에

지급 절차나 지급 요건에 대한 상세내용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부금 지급 절차

I 2021년도 주민세 (균등할) 이 비과세인 세대

모든 세대원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에는 시구청촌에서 급부내용이나 확인사항이 입력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시구청촌에 **회신 바랍니다.**
【확인사항】
 - ① 급부금 받을 계좌번호
 - ② 주민세가 부과된 분의 부양친족만 있는 세대가 아님



세대원 중에 2021년 1월 2일 이후 전입한 분이 있는 경우

- 급부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거주지의 시구청촌마다 다릅니다.**
- 2021년 12월 10일 시점에 거주지 시구청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 모든 세대원이 주민세 비과세 상당※에 해당하게 된 세대(가계급변세대)

※ 주민세 비과세 상당이란 모든 세대원의 연수입 예정액 (2021년 1월 이후~2022년 9월까지의 임의 1개월 수입×12배) 이 시구청촌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수준 이하인 것을 가리킵니다. (적용 한도액은 시구청촌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구청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1) 주민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연간급여수입의 기준치(도쿄도구부의 경우) :1인가구 100만엔 이하, 모·자(1인) 가구 156만엔 이하

-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와 함께 거주 시구청촌 창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수입이 감소했으나 급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사기죄) 에 해당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특례급부금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시피싱>**이나 **<개인정보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자택이나 직장 등에 도도부현·시구청촌이나 국가(공무원)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오는 경우 거주지 시구청촌이나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경찰상담 전용전화(#911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021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특별급부금 콜센터

0120-526-145

상담시간 9:00~20:00 (12/29~1/3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각부 비과세 세대 등 급부금 검색

(<https://www5.cao.go.jp/keizai1/hikazei/index.html>)